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출통관 FAQ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62題 수록>



2009. 11

부산세관
수출과

일련 번호	목 차	페이지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1	외국인 소유 선박을 내국인이 법원에서 경락받은 후 제3국 수출시 절차?	1
2	美 쇠고기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재수출시 중계무역인가? 반송인가?	2
3	제3국 중계무역등 경우 Invoice상 Shipper와 B/L상 Shipper를 다르게 할수 있나?	4
4	일본(A)와 미국(B)업체가 계약후 (A)가 우리나라(C)에게 하청을 줄경우 BL상 일본(A)가 Shipper가 되는데 수출신고서상에 일본업체 명의로 수출가능한가?	5
5	외국적 외항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부두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반송가능한가?	6
6	국내항에 입항한 무역선에 선적된 수입화물을 하역작업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송 가능 한가?	7
7	원제품 하자로 수입된 대체품을 사용하다 재수출시 원상태/위약수출 가능 여부?	8
8	수출물품 불량으로 재수입 면세된 물품을 테스트후 재수출시 수출신고 거래형태는?	9
9	수탁가공무역을 위해 원자재 수입 통관후 수탁가공계약이 취소되어 수입된 원자재를 국외반출시 관세법 106조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어 수출신고 및 환급이 가능한가?	10
10	개인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기계류등 일부 시설재를 무한으로 수출시 신고절차?	11
11	물품 수출후 하자발생으로 외국현지에서 폐기, 대체품 무환수출시 절차는?	12
12	남태평양에서 고기 잡고 있는 국내선박에 유탄유등 선용품 공급시 절차는?	13
13	내국적 선박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시설이 구비된 외국적 선박에 적재후 수출가능한가?	14
14	신차를 자동차 운반전용선박에 적재후 수출신고가 가능한가?	16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15	임대건설 중장비(건설기계)를 수출시 말소등록을 꼭 해야 하나?	17
16	중고농기계 트랙터도 수출말소를 해야하나?	19
17	새 자동차의 수출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20

일련 번호	목 차	페이지
18	자동차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하다 수출하는 경우 차량등록말소는 안해도 되나?	21
19	임대건설 중장비(건설기계)를 수출시 말소등록을 꼭 해야 하나?	22
20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로 들어온 요트가 자력으로 출항할 경우 절차는?	23
21	세관에 입항보고된 요트 수출절차?	24
III	보세공장물품, 주한미군 불하물품 수출 절차	
22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 수출절차?	25
23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납품해도 수출에 해당되나?	26
24	주한미군 불하물품 수출절차는?	28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25	FTA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29
26	수출물품의 FTA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의 실행세율을 알수 있는 방법?	30
27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31
28	국내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조달받아 완제품 제작후 수출시 FTA협정상 완전 생산품인가?	32
29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33
30	FTA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시 제출 서류는?	34
31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35
32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신청 절차?	36
33	우리업체 모델 A에 대해 원산지인증을 받으면 동일모델 B도 원산지 인증 가능한가?	39
V	CSI, 까르네, 전략물자, 남북교역물품 수출 절차 등	

일련 번호	목 차	페이지
34	CSI수출검사제도란?	40
35	까르네 수입물품의 기간내 미반출 추징,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절차 및 환급 가능 여부?	41
36	전략물자 여부의 판정 및 수출요령은?	42
37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43
VI	금, 지급수단 수출 절차	
38	금 1kg을 휴대반출할 경우 절차?	44
39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화폐, 증권 등의 수출 및 휴대 반출 절차?	45
VII	간이통관, 휴대반출 절차	
40	간이 수출통관 절차는?	47
41	소액(20불)샘플경우 화물선으로 선적될 것인데 간이통관이 가능한가?	48
42	수출수리된 물품에 대한 휴대반출 가능 여부와 기적확인은?	49
VIII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권등) 관련 수출 절차	
43	특허침해 우려물품의 수출신고 보류요청은 가능한가?	50
44	지방특산물 수출신고시 제한이나 승인, 신고사항?	51
45	수출물품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싶을 때 방법은?	52
IX	수출물품 품목확인제도 등 환급 관련	
46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관련 제조자 정정은 가능한가?	53
47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확인신청 요령?	54
48	중소기업에서 간이정액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 품목지정신청 방법은?	57

일련 번호	목 차	페이지
X	신고지연 가산세, 미선적 과태료 관련	
49	신용장이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중계수출인 경우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	58
50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에서 비대상 보세구역으로 운송, 다시 대상 보세구역으로 반입시 가산세는?	59
51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선적기간이 경과된 경우 어떻게 하나?	60
52	선적기간내 미선적된 물품의 과태료부과 절차는?	61
XI	기타 수출 절차 관련	
53	소유권 불인정 임대수출물품이 외국에서 현지 매각될 경우 수출정정을 해야 하나?	62
54	해외직접 투자를 하기 위한 수출신고 절차는?	63
55	위탁판매수출시 처리절차 및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얼마?	64
56	우리나라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신고절차는?	65
57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해손으로 회항하여 하륙시 절차는?	66
XII	기타 문의	
58	수출신고를 화주가 직접 할수 있나?	67
59	국내업체(A)와 외국업체(B)계약, B는 국내 C에게 하청, C는 A에게 납품시 수출인가?	69
60	중고자동차 수출시 목적국은 하나이고 구매자가 여럿일 경우(송품장이 여러개) 수출 신고서 1건으로 가능한가?	70
61	수출 저가신고 가능한가?	71
62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은 세관에서 발급 가능한가?	72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1	○ 외국인 소유 선박을 법원에서 내국인이 경락받은 후 중국 등지로 수출할 경우 절차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조(정의)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외국인 소유 당해 선박을 경락받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반송수출신고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법인) 또는 국내 외국법인이 취득한 후 운항에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송도구(선박)→보세화물전환(보세구역외장치허가)→반입신고→반송수출신고수리(반출)→출항허가(출항)→수출적하목록제출→수출이행완료 법령 관련 규정 ○ 내국인이 외국국적 선박을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 운항에 제공하였다면 그 선박은 관세부과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함(통칙14-0-1) ○ “반송”이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선박 등”이란 외국인이 소유한 선박 의미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란 내국인이 소유한 선박 및 우리나라 국민(법인)이 외국 국민(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선박 포함 법령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 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이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외국적 선박)을 말한다. 2. 편의치적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편의상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2	○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자가 베트남으로 수출 할 경우 중계무역인지 반송인지?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항 -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2조
 아하!! 그렇구나	□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수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수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자가 제3국에 수출하여 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는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식경제부답변 첨부)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u>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함으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u>를 말합니다. ※ 수입(반입)자와 반송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단순반송물품이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①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②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③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등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 참고 (중계무역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답변 내용)

1. A가 중계무역수출에 공하고자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있는 B가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므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동 질의의 경우 수입 및 수출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구분 78, 반송사유 15)

2. A가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을 내국인 B가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동 질의의 경우 역시 수입 및 수출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구분 78, 반송사유 15)

3. A가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요건미비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수입신고취하하고 제3국에 수출한 경우

국내 A가 당초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화된 수입여건 등 국내 상황에 따라 동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하여 각 각의 수입·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보아 원활한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래구분 79, 반송사유 40)

4. A가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수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한 경우

위 3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국내로 반입없이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 중계무역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거래구분 79, 반송사유 40)

5.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물품을 내국인이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내국인이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된 당해 물품을 외국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제3국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직접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거래구분 79, 반송사유 40)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3	○ 일본 업체가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후 그 일부 품목이 한국 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신고서 제조자란에 한국 업체를 수출화주로 신고하고, 선화증권(B/L)을 발급받을 때에는 Shipper를 일본 업체로 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무역실무 : 선화증권의 종류
 어 해!! 그렇구나	□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화주와 선화증권(B/L)에 표시된 Shipper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화증권의 종류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의 화주가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화증권(B/L)상 Shipper와 수출신고서상 화주가 일치하지 않는 선화증권을 원하신다면 선사 또는 포워더와 상의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선화증권(B/L)이란? -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운송계약서 - 물품운송을 맡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적화물의 수취증 -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해 본증권과 상환해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권리증권인 동시에 유가증권 -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지시증권 예) Third Party B/L : B/L상의 <u>선적인</u>이 계약당사자인 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되는 것으로 중계무역 등의 경우 해외 지사나 제3국에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며, 신용장상에 "Third Party B/L acceptable"이라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4	○ 수출자인 일본 업체(A)와 수입자인 미국 업체간(B)간에 수출계약을 하고 일본 업체(A)는 우리나라 업체(C)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업체(C)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업체(B)로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서 수출화주란에 일본 업체(A)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동법 시행령 제246조 - 부가가치세법
 아 하!! 그렇구나	□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신고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 및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수출신고서의 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제조업체 또는 지사 등을 통해 수출대행 계약을 맺은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소득, 재산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자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과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공급자부호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5	○ 외국적 외항선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획물을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부두에 정박해 있는 다른 외항선에 이적하여 수출할 경우 반송수출신고가 가능한지?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41조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아 하!! 그렇구나	☐ 외국적 외항선에서 잡은 어획물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며, 입항시 수입화물적하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반송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당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 모든 보세화물의 반출·입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세관화물정보시스템”: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합니다. ☐ 단순히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할 경우 ○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일시양륙(환적)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 내국적 외항선이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 수출은? ○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내국물품 하륙허가”를 감시부서에서 득한 후 일반수출물품과 같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수출통관진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6	○ 국내 항에 입항한 무역선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하역하지 않고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송수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통칙241-0...3
 아 하!! 그렇구나	☐ 입항시 적하목록이 제출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이 완료되어야만 반송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지 못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양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재운송된 경우에는 반송신고 대상이 아님 (관세법 통칙241-0...3) ☐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관 물품검사를 하려고 하여도 정확한 물품 검사가 어려움뿐만 아니라 통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국내 반출·입되는 모든 보세화물에 대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력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7	○ 기계를 수입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 후 재반입 할 조건으로 먼저 수출하고, 그 대체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내보낼 경우 원상태 또는 위약수출이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 -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아 하!! 그렇구나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위약 또는 원상태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장비나 기계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태 또는 위약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약수출(관세법상 환급)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 수리까지 득해야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환급특례법상 환급)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 보세구역에 반입의무는 없으며, 수입신고수리 후 2년 이내에 유상 수출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환급특례법 제4조1항.)

8	○ 수출했던 물품이 하자가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국내에서 물품을 수리한 후 재수출할 경우 수출신고 거래 형태는?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제 3호 다목 - 관세법 제 99조(재수입면세), 무역통계부호책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의 경우 거래구분 89 (국내수리 후 재반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도 거래구분89(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로 신고하고, 재수출조건부면세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9	○ 국내수출업체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외국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을 하다가 계약이 취소되어 수입된 원자재를 다시 외국으로 유·무환 반출 할 경우에 수출거래구분은 무엇이며, 환급이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아 하!! 그렇구나	□ 수탁가공무역으로 수입된 원재료가 계약취소 등 사유로 국외반출시 유환수탁가공무역은 72(원상태 수출)로, 무환수탁가공무역은 94(수출승인면제)로 수출 가능하며, 이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5항에 의거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수출입승인 면제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 제2호 나) -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2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수출승인 면제) 2호 바 ⇒ 거래구분 94 - <u>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의 잔량분 또는 수탁판매 수입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으로 무상 반출하는 물품</u> ○ 환급대상 수출 등(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5항)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수탁가공수출 22) 또는 <u>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원상태 수출 72)</u>

10	○ 개인이 베트남에 직접투자하기 위해 기계류 등 일부 시설재를 무환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신고가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 대외무역법 - 외환거래규정 제9조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외직접투자(현물투자)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개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재)로도 수출신고(거래구분 61)가 가능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사본 등) 등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 · 수출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수출신고서요건확인 또는 세관기재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문구 및 동 “신고번호” 기재(거래구분 61)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에서는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국내 거주 개인(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도 기계류 등 자본재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현물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해외직접투자(현물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 투자금의 회수의무 부여,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은행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국내거래 및 수출절차 등을 관리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수출 신고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 명의(주민등록번호)로 수출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1	○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와 상의하여 외국현지에서 물품을 폐기하기로 하고 그 대체품을 무환으로 수출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며 환급은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 외환관리법
 아 하!! 그렇구나	☐ 계약조건이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 무환수출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서 ⑨란 거래구분 90, ⑪란 결제방법 GN, ⑫란 모델, 규격 란에 No Commercial Value로 표기, ④⑩란 신고가격(FOB) 기재, ④③결제금액(송품장상의 신고가격)을 기재한다. ○ 수출승인면제 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Fax, Mail 등) 첨부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무환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 등) 1항 3호에 의거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나, 수출된 물품이 반입되지 않을 경우 환급대상 수출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관 환급담당자에게 상의하세요.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나목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면제에 해당됩니다 - 수출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승인면제대상입니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12	○ 선주가 남태평양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의 선박에 선구 및 윤활유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 선(기)용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고시
 아 하!! 그렇구나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한국원양산업협의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무환수출)를 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서 ⑨란 거래분 94, ⑪란 결제방법 GN, ⑮란모델,규격란에 No Commercial Value로 표기, ④⑩란 신고가격(FOB)기재 ④②결제금액: 신고가격을 기재한다 ○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수출승인면제 첨부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면제 -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은 수출 승인 면제 대상입니다. TIP : 「선용품」이란 우리나라에 입항신고 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소비되는 물품을 말한다. 즉 물품공급업자를 통해 선용품적재 허가를 득하여 선적완료하면 수출갈음됩니다.

I

반송, 중계무역등 「수출 거래 구분」 등

13	○ 냉동시설이 안 되어 있는 내국적 어선이 내항에서 오징어를 어획한 후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외국적 외항선에 보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관련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1조(선상수출신고) 1항 2호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1조(선상수출신고) 3항 - 관세법 제140조 제4항
	□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의 사전허가(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를 받을 경우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상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별지8호서식)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수출신고하면 됩니다.(소재지 관할세관) □ 선상수출 신고대상 ○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 확인하는 물품(예 : 산물 및 광산물) ○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별지 제8호 서식]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 접수번호 :				1일
수 출 화 주	①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② 대 표 자		⑤ 통관고유부호	
	③ 주 소		⑥ 사업장소재지	
적 재 물 품		⑦ H.S 번호(6단위)	⑧ 품 명	
⑨ 신 청 사 유		(예시) 유동성 액체로서 적재상태로 검량 통관키 위함.		
* 유효 기 간		월 일	* 비 고	
위와 같이 관세법 제140조 제4항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구비서류 : 없음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세 관 장 (인)				

* 표시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Back

14	○ 자동차 운반 전용선박에 자동차를 적재한 후 수출신고가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1조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조 - 관세법 제140조 제4항
 아 하!! 그렇구나	□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등은 세관장의 사전허가(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를 받을 경우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 제1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 (별지8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u>수출과에서 수리전 적재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u> 그리고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제140조 제4항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15	○ 해외 현지 건설장에 건설기계를 임대 할 목적으로 수출 하려면 건설기계등록을 말소 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수출입통합공고 제137조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2008. 1.24)
	☐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에서 사실 확인이 되면 등록말소를 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통합공고 제137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반수출할 경우에는 도난 등 건설기계의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신고수리 전까지 건설기계 등록말소를 해야만 수출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건설기계 : 별첨1참조] ☐ 건설기계를 해외임대 목적 등으로 일시반출 하는 경우의 등록말소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출기간 동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반출기간만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시 반출하는 임대수출인 경우 등록말소를 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법리해석하고 있습니다.

[별 표]

건 설 기 계 명	범 위
1. 불도우저(8429)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8429)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우더(8429)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8427.20)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8429)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87류)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87류)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8429)
9. 로올러(8429)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8479.10)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бето칭플랜트(8474.31)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8479.10)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8479.10)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87류)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8413.30)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8474.32)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8479.10)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8479.10)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쇠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8474.20)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8430.4)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받기 (8430.10)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8905.10)	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향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16	○ 중고자동차 또는 트랙터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말소를 해야만 수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농기계인 트랙터도 수출시 등록말소를 해야만 수출이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6호(말소등록), 제2조 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1항
 아 하!! 그렇구나	□ 농업용 트랙터는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에 해당되므로 수출신고수리 시까지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기계라면 수출신고수리 후에는 관련 기관에 말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6호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 제2조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가 게재되어 있음.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1항에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17	○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시 필요한 서류와 수출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통합공고 제121조
	□ 등록되지 않은 신차일 경우는 차량제작증 원본(없을시 발급받지 못한 사유서), 매매영수증, 임시운행번호판 반납확인서(임시운행허가 차량), 송품장,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수출신고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 시에는 물품상태는 O(old), 품명에 Used 라고 표기하여 중고차량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송품장, Packing List, 자동차등록말소증 등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전산통관시스템을 갖춘 관세사사무소나 관세법인사무소 등을 통해 전자교환방식(EDI)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방법은 EDI시스템을 통한 방법 및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일명"UNI-PASS")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 ○ 전자의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신고인 PC에 EDI 전송프로그램 설치하여야 하며, 후자는 동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구비해야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18	○ 자동차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출하는 경우 차량등록말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 규정	- 통합공고 제121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아하!! 그렇구나	□ 등록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전학원 교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말소 후 사용하였다면 등록말소 된 이력이 자동차등록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등록말소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신차를 운전학원 교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처음부터 차량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출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6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19	○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및 제출서류는?
관련 규정	-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통합공고 제 121조
 아 하!! 그렇구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및 통합공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 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일 경우에는 송품장 ,packing list, 자동차등록말소증 등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전산통관시스템을 갖춘 관세사사무소나 관세법인사무소 뿐만 아니라 화주가 직접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방법은 EDI시스템을 통한 방법 및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일명"UNI-PASS")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 ○ 전자의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신고인 PC에 EDI 전송프로그램 설치하여야 하며, 후자는 동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구비해야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20	○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로 들어온 요트(보세구역에 장치)가 자력으로 출항할 경우 절차는?
관련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 고시 -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
 아 하!! 그렇구나	□ 수입화물적하목록이 제출된 요트는 보세화물로서 화물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세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반송수출신고수리를 득한 후 출항허가를 받아 출항하면 됩니다. ○ 진행절차 : 하선신고→ 수입적하목록 제출→ 보세구역 반입 → 반송수출신고수리(반출)→출항허가(출항)→수출적하목록제출→수출이행완료 □ 또한 자력으로 외국으로 출항할 경우 출항 12시간 전까지 해당 선박대리점은 관할 세관(감시관실)에 출항허가를 득하고, 동시에 통관지원과에 수출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수출이행이 완료됩니다. ¶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 ① 해상화물은 해당화물 적재전까지(미국행은 적재 24시간 전) ② 중국, 일본행 화물이나 선상수출신고물품등: 출항 익일 24시까지 ③ 항공화물은 출항 익일 24시까지 ※ 외국인(개인) 소유 요트의 출항허가 신청시 대리점이 없으므로 관련 구비서류나 출항허가서를 감시관실에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II

자동차, 건설기계, 요트 등 수출 절차

21	○ 세관에 입항보고 된 외국인 소유의 요트를 구매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 동법 241조 -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3조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
 아 하!! 그렇구나	☐ 운송도구를 보세화물로 전환한 후 수출신고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당해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의 입증자료를 갖추어 반송수출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려면 운송기구를 보세화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운송기구를 보세화물로 전환하는 방법 - 화물과에 보세구역외장치허가 → 물품반입신고 → 반송수출신고 수리(반출)→출항허가(출항)→수출적하목록제출→수출이행완료 ☐ 외국에서 도착한 운송도구(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항에 입항하게 되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입항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입항보고 하여야 합니다.

III

보세공장물품 수출 절차

22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 절차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7조, 제24조6항
 아 하!! 그렇구나	□ 보세공장 물품은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신고는 하였지만 수입신고수리를 필하지 않은 보세화물이므로, 보세구역(보세공장, 타소장치, 타보세공장)에 장치하고 당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간 장외작업 등으로 이동이 있을 경우 당해물품이 최종적으로 장치된 보세공장(장외작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 수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 수출화물 적재, 미적재시 조치사항 ○ 보세공장 수출화물은 보세운송 절차는 생략된다. 그리고 일반 수출과 같이 30일 이내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 30일내 적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보세구역 재반입을 명령하여 신고취소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보세공장간 물품이동은 보세운송 절차에 의한다 1. 동일 법인 보세공장간 반출입 물품 2.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간 반출입 물품 3.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III

보세공장물품 수출 절차

23	○ 보세공장에 내·외국물품 원재료를 납품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	- 환급특례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3항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처리에관한고시 제5장
 아하!! 그렇구나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4조 3항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됩니다. * 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등 □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수출갈음서류 : 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대상 수출 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 신청서(별지 제 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4) 매매계약서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보세공장의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즉 수출용 보세공장에 한함 ※ 수출 갈음서류란?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 가운데 보세창고(수출물품보수/조립),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선용품/기용품 반입 또는 적재할 경우 수출신고필증 대신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별지 2-3호 서식)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기간 : 즉시

⑥세관-과 : 999-99

⑧반입(적재)일자 :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공급대행자(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⑭환급신청인 : 9 (1. 공급자 2. 제조자)

총괄수 : 99

총금액합계 : (FOB₩) 999,999,999,999,999

※란번호	※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 ※포장갯수	※수량(중량)/단위 ※포장종류	※공급금액(FOB₩)
1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9/XX XXX	9,999,999,999,999
2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9/XX XXX	9,999,999,999,999
.	.	.	.	.
99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9/XX XXX	9,999,999,999,999

[illegible]

※확인일자 : YYYY/MM/DD

문화인인 :

III

주한미군 불하물품 수출 절차

24	○ 주한미군 불하물품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 반송절차에 관한고시 제3조
 아 하!! 그렇구나	□ 미군교역처의 불하계약서 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필증을 확인하여 반송수출 또는 일반수출 여부를 결정한 후 일반수출 또는 반송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 수출조건부로 미군불하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물품은 보세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 ⑨란 거래분 71, ⑳반송사유 90, ㉕란 모델,규격란에 불하된 물품기재, ④⑩란 신고가격(FOB)기재 ④②결제금액: 신고가격을 기재 ※ 구비서류 : 미군교역처의 불하계약서 및 불하목록(모델,규격표시), 송품장, 포장명세서 ○ 수입신고 수리된 미군불하 물품을 수출할 경우 - 미군교역처에서 SOFA특례법 제9조에 의거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이므로 일반수출화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수입신고수리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기타

25	○ FTA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
 아 허!! 그렇구나	□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의의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FTA 추진이유 ○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FTA를 체결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FTA를 체결하면 수입관세 철폐로 해외 원자재 및 부품 구매 시 값싸게 조달 가능하며,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 기술 이전이 쉽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축소되어 수출 증가로 인한 국민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은?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 *한-ASEAN FTA, *EFTA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연합체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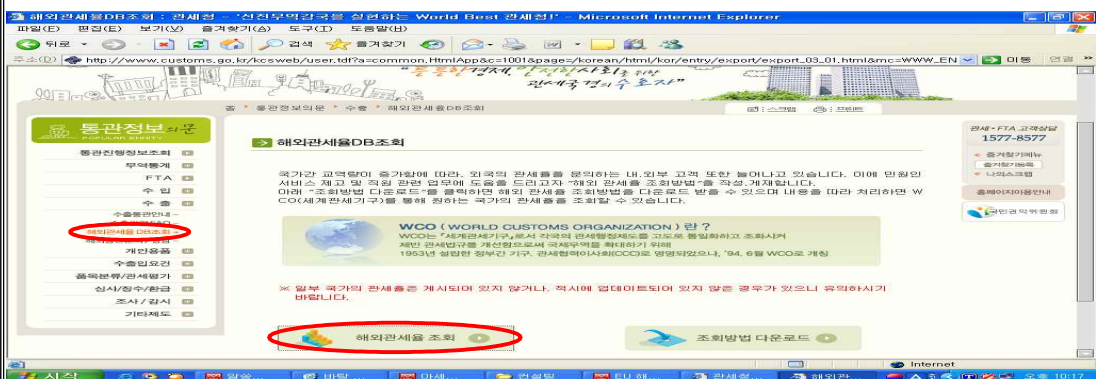
- 수출물품에 대해 FTA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의 실행세율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은?

관련
규정

-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 무역협회 홈페이지 무역정보(<http://db.kita.net/>)

□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대상국가의 협정세율을 알아야 수출시장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자료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 관세율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수출>해외관세율 DB조회 > 해외관세율조회를 클릭하면 WCO의 관세율 DB와 링크되어 있어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시면 해당국 관세율 검색이 가능합니다.



- 무역협회 홈페이지 무역정보(<http://db.kita.net/>) > 무역정보 > 국가통상정보 > 통상·수입규제 > 관세율 정보를 클릭하여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시면 해당국 관세율 정보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27

○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7조, 협정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
-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하여 업무 메뉴얼 폴더에서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수출)을 선택하면 협정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 > 수출선택 > 해당국가 선택 > HS 번호 입력 >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에서 조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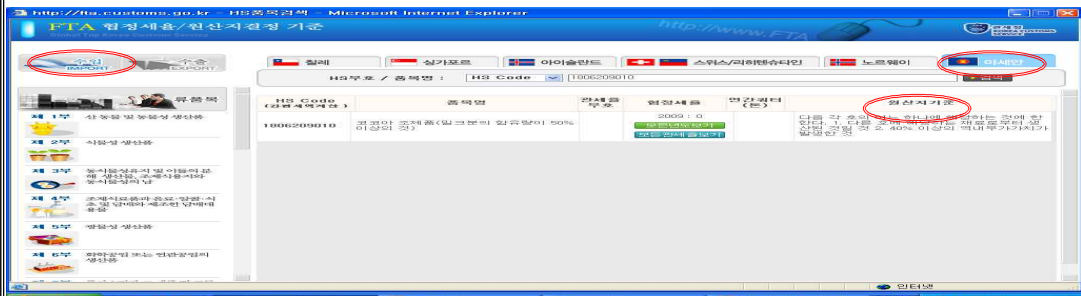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하므로 협정세율을 확인한 후 해당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

- 일반적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기준
- 보충적 기준으로 불인정공정기준, 원산지 인정 최소기준, 미소기준 등이 있음



아 하!!
그렇구나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28	○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은 모두 국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 물품은 FTA 협정상 완전 생산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 국내 조달 원재료가 해당제품의 국내 원산지 재료로 오해하기 쉬우나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 > 수출선택 > 해당국가 선택 > HS 번호 입력 >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에서 조회 가능 □ 원산지결정기준에는 통상적으로 1.완전생산기준 2.실질적 변경기준(① 세번변경기준 ② 부가가치기준 ③ 제조가공 공정기준) 3.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구분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납품업체가 확인하여 작성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출자는 이러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산지 재료인지 비원산지 재료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합니다.)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29

- FTA협정 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으며 협정에 따라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는 각기 다릅니다.

- 기관발급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
- 자율발급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 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한 · 칠레	자율발급	
한 · 싱가포르	세 관	
한 · EFTA	자율발급	
한 · 미	자율발급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대한민국	세관, 상공회의소. 단 개성공단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30	○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아 해!! 그렇구나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자)는 발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특례고시 별지2호서식) ○ 원산지확인서(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 다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소명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세번변경기준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 관련 입증서류(예 :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부가가치기준적용물품 : 비원산지 재료, 원산지 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31	○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아 하!! 그렇구나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만, FTA특례법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적용신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가능하므로, 결국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문 부록의 제10조 1항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합니다.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32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매년 세관에 5종이상의 구비서류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발급받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발급받는 제도가 없는지요?(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인증기간(3년) 동안 세관의 건별심사확인을 생략하고,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업체 신청 절차 - 관세청웹사이트 >> Uni-pass >> 수출통관 선택 >> 원산지인증 수출 인증 신청 선택>> 인증신청서 작성>>민원접수 - 인증신청 → 요건심사(세관장) → 인증(세관장) → 인증통보(세관장) → 관세청·업체·발급기관 ※ 구비서류: 신청서,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내역 등 ○ 인증 요건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1. 제도 개요

-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하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세관장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 3년동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
-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5종 이상의 구비서류 제출과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발급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받게 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이 빨라지고,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
 - ※ 현재 우리나라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에서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하였으며, 한-인도 CEPA(협상중)에서도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할 예정임
 - ※ 한-EU FTA는 자율발급제도를 채택하지만, 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2. 인증 요건

-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로써,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 ☐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5회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3. 혜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발급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생략 및 심사 간소화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신청시 편리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간주되어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Customs Authorization No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 가능
 - ※ 동 제도 시행이전에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생산공장보유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간주되어 종전의 혜택을 유지

4.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 인증신청 → 요건심사(세관장) → 인증(세관장) → 인증통보(세관장) → 관세청·업체·발급기관
 - ※ 구비서류 : 신청서,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내역 등
- 세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요건 충족시, 인증서 교부(3년간 유효)
 -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 종류 변경시는 해당물품 에 대한 새로운 인증필요
-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 확인 가능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대한 정·첩보를 입수

IV FTA 협정과 수출 절차

33	○ 우리회사 대표모델인 A에 대해 원산지인증을 받으면 품목번호가 동일한 모델 B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아하!! 그렇구나	□ 원산지인증은 품명·규격별, 협정별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델 A를 인증 받았다고 해서, 모델 B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의 경우도, 한-아세안 FTA 협정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 받지 않은 나머지 협정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종전에 관세청장이 지정·운영하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를 확대하여 그 요건과 운영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인증을 받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원산지확인절차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34

○ 미국으로 섬유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로 수출신고수리가 되었는데 CSI수출검사로 선별되었다고 검사를 하여야 한데 수출신고수리 후에 수출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관련
규정

- 미국과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 제3-1-7조



아 해!!
그렇구나

□ 미국과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미국행 컨테이너 수출화물은 **선사가 화물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출적하목록을 한국세관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03. 8.13부터 미 세관요원과 부산세관 수출과 CSI요원이 부산항 합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선적전에 안보위험성이 높은 수출화물을 선별하여 컨테이너검색기검사(또는 현품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 컨테이너 보안협정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테러조직들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등을 밀반입하거나 수송 도중 폭발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국 항만에서 컨테이너 내장물품에 대해 선적 전에 검사하는 내용의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한국 관세청간 체결된 협정을 말합니다.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검사관과 해당 국가의 기관은 외국항만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그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화물투시기(X-ray)나 방사능탐지기등 기계적 장비로 사전 검사하고, 위험 화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입항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

○ 까르네로 수입된 물품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아 추징당한 후, 다시 외국으로 보낼 경우 반송인지 일반수출 건인지?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규정

- ATA까르네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 재반출조건 까르네로 수입된 물품이 재수출 기간 1년 내에 반출하지 못했을 경우 세관 해당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추징결의와 부과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면 해당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재수출 할 시에는 일반수출신고를 하되 거래구분은 기타 수출승인면제물품(94)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지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난 후 해당 업체에 해당세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 유상수출로서 원상태 수출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급담당자에게 문의)



관련 규정

제4-1조(납세의무자) ① 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수출기간 경과 후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명의인 또는 사용인

제3-7조(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제3-5조의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 부분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한다.

36

○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와 수출요령은?

관련
규정

-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 4, 5조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9호)



아 하!!
그렇구나

□ 제조자 또는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판정(자가판정)하거나, 사전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의뢰(사전판정)하여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득한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www.yestrade.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자가판정 및 사전판정이 가능하고, 수출허가 및 각종 전략물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판정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

1. 지식경제부장관 - 통합고시 별표2의 제1부 ~ 제9부, 일반방산물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별표2의 제10부(원자력 전용물품)
3. 방위사업청장 - 별표3 군용물자(일반 방산물자 제외)

○ 기 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을 제한하며, 전략물자 허가기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상황허가 :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37	○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법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아 하!! 그렇구나	□ 남북교류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별표1]인 경우 해당법령에 의한 요건확인서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해당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관장확인수출물품 [별표1]중 HSK10단위가 연계되지 않는 물품 경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통일부) 제4조 제1항 제4호 컴퓨터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해당물품 ⇒ 전략물자 관련 해당기관에 요건확인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 ①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내국거래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해당되어 환급이 가능하다 단, 북한에서 제도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한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은 제외

VI

금, 지급수단 수출 절차

38	◦ 금 1kg을 휴대반출하려고 하니 법이 바뀌었다고 휴대품과에서 수출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개정안(09년)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 8-5조, 제8-1조 제3호
 아 해!! 그렇구나	□ 기존 지급수단 등(지급수단·귀금속·증권)에는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외국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귀금속은 지급수단 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에게 신고(외국환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송품장, Packing List)로 하되 구매자료(성분표시)를 구비할 것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세관장에게 외국환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수출신고 수리된 금을 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VI

금, 지급수단 수출 절차

39

○ 대외지급수단인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 수표화폐, 증권 등의 수출절차는?

관련
규정

○ 외국환 거래법
○ 관세법 제226조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일반화물, 특송화물 및 우편물로 수출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후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출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①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의한 수출신고

-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하기 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통관지 세관장 수출신고 담당부서에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별지1)” 2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① 지급수단 등의 수출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

②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출신고

- (수출자) 수출신고서에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
- (세관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신고를 접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의한 지급수단 등의 수출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수리



아 하!!
그렇구나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 등”이라 함)을 휴대수출입 하는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1호 (별지1호 동일) 서식 2통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접수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신고수리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1호, 별지 3-1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Application (changes) in Import/Export Permit of Means of Payment		처리기간 Processing Time 3일								
지급 수단등 Means of Payment etc.	① 종 류 Cord of Currency									
	② 수 량 Amount									
	③ 수 출 입 금 액 Import/Export Value									
	④ 대 가 결 제 방 법 Method of Payment									
상대자 Trading Partner	⑤ 상 호 Name of Business									
	⑥ 대 표 자 Representative									
	⑦ 소 재 지 Address									
⑧ 기 타 (또는 변경내용) Other(or Changes)										
외국환거래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 hereby apply for an import/export permit of means of payment. 년 월 일 Date : Month Day Year 신청인 주 소 : Applicants Address 상 호 : Name of Business 대표자 : Name of Representative (전화) (Tel) 세관의 장 귀하 To Director of Customshous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신 고 (수 리) 번 호</td> <td></td> </tr> <tr> <td>신 고 수 리 금 액</td> <td></td> </tr> <tr> <td>신 고 수 리 일 자</td> <td></td> </tr> <tr> <td>유 효 기 간</td> <td></td> </tr> </table>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신 고 수 리 일 자		유 효 기 간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신 고 수 리 일 자										
유 효 기 간										

VII

간이통관, 휴대반출 절차

40

- 외국 바이어가 견품을 요청하여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간이한 수출통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3장



아 해!!
그렇구나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 언론기관 보도용품,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기준 200만원 이하의 물품, 카다로그와 신상품 견본 등 무상으로 수출하는 소액물품 등을 특송업체의 특급화물이나 우편물품 등에 대하여 정식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만 제출하고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통관절차가 있습니다.

- ※ 간이통관절차는 주로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가 불필요한 수출 통관절차입니다.

- ※ 관세법 제226조(세관장확인대상) 해당물품, 계약상이 수출, 재수출 조건부 수출,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 신고 또는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제외됩니다.

- ※ 휴대반출물품을 재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또는 휴대품 반출신고서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이를 재수입시 면세통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수출통관고시 제3-20-7조의2)

□ 간이수출통관의 종류

- ① 간이통관목록에 의한 통관 : 특송업체에서 취급하는 항공수출 화물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목록을 특송업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수출신고에 갈음하는 수출통관제도(수출통관고시 제3-0-1조)
- ② 우편물목록에 의한 통관 :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작성한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수출 신고에 갈음하는 수출통관제도(수출통관고시 제3-0-7조).
- ③ 구두신고에 의한 휴대품통관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두신고를 수출신고로 갈음하는 수출통관제도

41

○ 소액(20불)샘플을 화물선으로 탁송하여 보낼 경우에도 간이통관이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3장



아 하!!
그렇구나

□ 소액샘플을 수출할 경우 간이통관대상에는 해당되나 화물선에 선적될 경우 선적화물에 해당되므로 일반수출신고 대상입니다.

화물선으로 선적할 시에는 *간이수출통관 대상이 될 수 없어 일반수출신고(거래구분 94)로 수출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간이수출통관

- 특송업체의 특급화물이나 우편물품 및 여객선을 통한 휴대반출시 정식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등을 일괄 제출하여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통관절차이다.

□ 간이수출통관의 종류

- ① 간이통관목록에 의한 통관 : 특송업체에서 취급하는 항공수출 화물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목록을 특송업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수출신고에 갈음하는 수출통관제도(수출통관고시 제3-0-1조)
- ② 우편물목록에 의한 통관 :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작성한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수출신고에 갈음하는 수출통관제도(수출통관고시 제3-0-7조).
- ③ 구두신고에 의한 휴대품통관 : 해외 수출상담 · 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두신고를 수출신고로 갈음하는 수출통관제도

VII

간이통관, 휴대반출 절차

42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개인이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기적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관련 규정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 8-1조
 아 하!! 그렇구나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출국시 출국담당 세관직원에게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현품확인 및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기)적 확인을 받지 않으면 미선적 처리되며, 선(기)적증명이 되지 않고 선(기)적기간이 지나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제8-1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일시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하였다가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2008. 9. 3 개정> 2.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제4조의 면세 판매자가 동 규정 제8조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관세법 제248조규정에 의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6. 법령에서 반출은 제한하는 물품<2008. 9. 3 개정> 7. 해외 수출상당.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2008. 9. 3 개정>

43	○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자가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물품에 대해 보류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
 아 해!! 그렇구나	□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물품이 지적재산권자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 지적재산권자는 침해우려 수출신고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일정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출신고 예정 물품인 경우 ○ CY에 반입되어 있는 수출신고 전 물품(보세화물제외)은 내국 물품으로 관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침해우려가 긴급한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등 증거 유실을 방지하는 절차를 취한 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지적재산권단속기관(특허청, 경찰청)에 고발하여 침해여부의 다툼을 법정에서 가리면 됩니다. ☞ 우리세관(수출과)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 수출신고 접수 전에 특허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서가 서류 제출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정밀수출심사를 실시하고 침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품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출검사 결과 지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재산권자에게 수출신고사실을 통보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4	○ 지방특산물을 수출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나 승인,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제한, 금지, 승인, 신고) -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사항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및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아 하!! 그렇구나	□ 특산물이라고 별도로 수출제한, 승인, 신고사항은 없으며, 수출신고 품목번호에 따라 요건확인대상품목인 경우 수출입 요령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특산품을 수출할 경우에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허위표시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수출입요건 및 절차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에서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중에서 수출 제한품목, 승인품목, 추천품목 등 수출입요령에서 고시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의 추천 등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45

○ 수출물품에 대한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싶은데 신고방법은?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5조, 동법시행령 제237조

□ 상표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아래 신고서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증명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조건

(1)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상표권의 내용 및 범위 (3)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5)대리 신고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이어야 세관에 상표 신고 가능합니다.

○ 접수 처리기간 및 효력발생

-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간(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 신고의 효력은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전국세관에 그 효력 발생)



아 하!!
그렇구나

□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한 경우 수출입 신고물품의 심사/검사과정에서 상표권을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줍니다.

※ 상표권 침해단속관련기관 : 특허청, 관세청(수출입물품), 경찰, 관련위임기관



지식재산권보호란?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X

수출물품 품목확인제도 등 환급 관련

46	○ 1년 전부터 수출자와 제조자를 K물류업체로 수출신고 하여왔으나, 실제로 물품을 제조한 B업체로 수출 정정하여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수출통관고시 제2-5-1조(정정/취하 신청방법 및 신청인의 자격) - 수출통관고시 제2-5-2조(신청의 처리) 4항
 아 해!! 그렇구나	☐ 1년 전 수출신고수리 된 것이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출신고 정정은 가능하나 관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제는 환급부서에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 제조자 변경 시에는 변경 전 제조자의 변경동의서, 변경전 제조자의 인감증명서,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 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 수출신고수리세관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정정 신청서와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신고 정정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 관세 환급대상 수출물품인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환급관련 자세한 상담은 환급관련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관 환급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X

수출물품 품목확인제도 등 환급 관련

47

○ 물품을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규정

-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아 하!!
그렇구나

☐ 신고인 또는 화주는 본인이 수출신고 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품목번호확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관실적이 있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유니패스 또는 서류제출로 신청하면 됩니다.
 - 관세청 웹사이트 >> Uni-pass >> 업무처리선택 >> 기타전자민원>>품목번호확인신청서 작성>>민원접수

☐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예정 물품 품목번호 확인

- 수출입 하고자하는 자,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1호),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제조회사 의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용도설명서, 기계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분석수수료 납부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을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통보)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042-930-3630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번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번호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 청 인	회사(업체)명		대표자성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메 일		
	홈 페이지				
통 관 사 항	외국거래상대방	업 체 명			
		홈페이지			
	수출입사항	신고번호		신 고 일 자	
		신고세번		통관지세관	
신 청 물 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 래 가 격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제2-2호서식) 참조			
기 타	견 본 여 부	☐ 유 ☐ 무			
	유권해석유무	☐ 품목번호확인서 ☐ 사전심사 ☐ 민원회신 ☐ 심사청구등			
	질 의 사 유	☐ 세율·세액확인 ☐ 감면대상여부확인 ☐ 수출입요건확인 ☐ 원산지 결정 ☐ 기타()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1조에 의거 품목번호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
 2. 별지 제2-2호 서식.
 3.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물 품 설 명 서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 작동원리, 주요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해당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붙임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 물품설명서 및 상세내역자료가 전자File로 된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별도 송부 요

IX

수출물품 품목확인제도 등 환급 관련

48

○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간이정액 환급 대상품목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품목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련
규정

○ 환급특례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6, 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시요청사유서 (2)수출물품별(HSK) 소요원재료의 내역
(3)원재료별 최근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기타 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요청하면 1년에 한번씩 관세청장이 심사한 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고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042-481-7861) 문의 바람]

※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정할 때에는 최근 6개월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 1년에 한번 관세청장이 고시



아 하!!
그렇구나

□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 4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

※ 간이정액 환급이란?

-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세번부호(HS10단위)에 해당될 경우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해주는 제도
- 수출 총신고가격 FOB 10,000 원당 간이정액환급액을 적용
- 따라서 수입원자재를 사용했는지 국내생산원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급대상 수출 이행여부에 따라 환급

X

신고지연 가산세 미선적 과태료 관련

49	○ 국내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외국 현지투자업체에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신용장 有) 반송 수출하는 보세화물도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제3항 내지 4항 동법 시행령 제247조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항 ○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아 하!! 그렇구나	□ 환급특례법 제3조 “수출용원재료”란 수출물품을 직간접으로 생산하거나, 원상태수출에 공해져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자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국 중계목적의 반송 수출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지연가산세 징수 대상입니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가산세 면제대상)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5. 환적화물 7. 여행자휴대품 ※ 수입(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지역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신고지역가산세 대상지역(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일부, 인천항 일부)에 반입된 신고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X

신고지연 가산세, 미선적 과태료 관련

50	○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보세구역(A)에서 30일이 지난 후 비대상 보세구역(B)으로 운송되었다가 다시 대상 보세구역(A)으로 반입 시 신고지연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 241조 3~4항 및 제247조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 28조
 아 하!! 그렇구나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지연가산세 대상보세구역 기간만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 신고지역가산세 대상지역(인천공항,김해공항,부산항 일부, 인천항 일부) ○ 30일이 지난 익일부터 기산하며 30일이 초과되어 비대상 보세구역인 B구역으로 보세운송되었다가 대상구역 A구역으로 운송시 대상보세구역(A구역) 기간만큼만 합산하여 징수 ※ 신고지연가산세대상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하는 경우 - 30일이 초과되지 않고 비대상보세구역으로 가는 경우 : 징수하지 않음 - 30일이 초과되지 않고 대상보세구역으로 가는 경우 ⇒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지역 장치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초과하면 징수 - 30일이 초과되어 비대상보세구역으로 가는 경우 ⇒ 최초 대상지역 30일 초과분만 징수 - 30일이 초과되어 대상보세구역으로 가는 경우 ⇒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지역 장치기간을 합산하여 징수

51	○ 반송신고수리 물품이 선적기간이 경과되어 선적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규정	-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12조
	□ 반송신고수리 물품은 일반 수출물품과 달리 선적기간연장을 할 수 없고 미선적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세관장이 국외반출(반송) 또는 신고취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반송신고수리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52	○ 적재의무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했을 경우 미선적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0-1조(수출물품의 적재) -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시행세칙 제5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아 해!! 그렇구나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수출물품을 적재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은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적재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적재기간 경과 후 신청하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재기간 연장사유가 타당할 때는 신고수리 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예시> ☞ 수출물품을 적재기간내에 미적재시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납시 월 1.2%씩 60개월 동안 가산금부과) - 100,000원의 과태료부과 하기 전,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안내서를 통지하는데 이 의견진술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 경감된 8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의견진술안내서 : 선적의무기간내 수출물품을 선적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과 함께 20%경감된 고지서 발송 ¶Tip: 과태료와 선적정리는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선적건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취하, 정정, 선적 등으로 정리를 하여야 함.

XI

기타 수출 절차 관련

53

- 임대목적으로 수출했던 물품이 현지에서 매각되었을 경우나, 전시 목적으로 반출되었던 물품(거래구분 39)이 현지에서 매각될 경우 수출신고정정을 하여야 하는지?

관련
규정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출

□ 수출신고 정정을 하여야 외화가득 수출실적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업체의 지속적인 수출실적관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출실적증명은 무역협회에서 받거나, 신고세관에 매매 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 소유권 불이전 임대수출물품이 현지에서 매각될 경우 거래형태 정정 필요 [39(소유권 불이전 조건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11(일반수출)] 수출자는 매매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외국환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 입금에 대한 외환사후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 하!!
그렇구나



관련 규정

-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상 수출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引渡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적형태의 무체물까지 포함된다.
- “소유권 불이전 임대수출(거래구분 39)”이란? (관세법상 수출)
 - 임대방식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수출로 향후 재반입이 필수 조건이므로 이 거래형태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유권 불이전으로 임대 수출된 물품이 외국 현지에서 매각된 경우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됨.

54	○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 8항
	□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 승인 받은 후 해외 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간인된 현물투자명세표 1부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면 제출된 신고서를 심사한 후 하자가 없는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검사로 선별된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한 후 수출신고서가 수리됩니다.(수출거래구분 부호를 “61”로 신고) ※ 해당 국가 투자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 해외진출정보 > 해외 투자정보 > 국별투자핵심가이드를 선택, 원하시는 국가를 선택하시면, 해외투자시 알아야 할 노동, 제세, 투자관련 법조항 등 투자 관련 정보를 무료 제공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신고 의무자 -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당해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의 제공자가 거주자의 지정거래 은행장에게 신고

XI

기타 수출 절차 관련

55	○ 중국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 거래구분, 결제방법, 결제금액표시 및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 무역통계부호 - 외환거래법
 아 하!! 그렇구나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 수출은 거래구분 “31”, 결제방법은 GN(무환), 결제금액표시는 상업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을 기재합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유상수출의 경우 수출 통관금액(FOB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 판매 가격이 수출실적인정금액이 됩니다. ※ 유상판매대금을 최종 결제한 후 화주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출 신고정정을 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계약이란?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합니다. 예) BWT(보세창고인도조건), CTS(본지사위탁판매) - 환거래 없이 물품을 수출하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수출로 “유상(추후에 대금결제) 무환수출”에 해당됩니다. ※ 기타 회계상 매출처리 관계는 국세청에 민원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XI

기타 수출 절차 관련

56	○ 우리나라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원양수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신고절차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조4 나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2(현지수출어패류신고) - 제2-6-3(원양수산물신고)
아 하!! 그렇구나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원양수산물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한국 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해야 합니다. ☐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 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란? - 선박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

XI

기타 수출 절차 관련

57	○ 수출신고수리 받은 물품을 선적하고 출항하였으나 관세선을 지나기 전에 선박충돌로 해손을 당해 회항하여 수출물품을 하륙하려고 할 경우 처리방안은?
관련 규정	- 관세법은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아 하!! 그렇구나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고자 하는 자는 일시양륙신고 또는 하선신고를 하고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처리 방안 ○ 하륙한 물품을 확인한 후 해손이 심해 수출을 할 수 없을 경우 - 선사(대리점)에서 <u>수출 적하목록정정(수출적하목록상 해당B/L 삭제)을 세관 관련과에 신청한 다음, 수출과에 수출신고 취하 수리</u>를 받으면 해당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전환되어 화주의 필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해손정도를 확인한 후 수출에 지장이 없어 다시 선적할 경우 - <u>충돌선박</u>에 다시 선적할 수 있다면 <u>적재허가를 득한 후 출항</u>하면 되고, - <u>다른 선박에 선적</u>하여 출항하려면 <u>처음 제출한 수출적하목록정정(수출적하목록상 해당B/L 삭제)을 세관 관련과에 신청하여 승인</u> 받고 <u>다른 선박</u>에 적재하여 출항했을 경우 출항 후 익일까지 당해 선박에 대한 <u>수출적하목록을 제출</u>하면 수출이행이 완료됩니다. ☞ 이 문제는 일시양륙신고 또는 하선신고의 절차등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해당세관(과)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8

○ 수출신고서 화주가 직접할 수 있습니까?

관련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

□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출화주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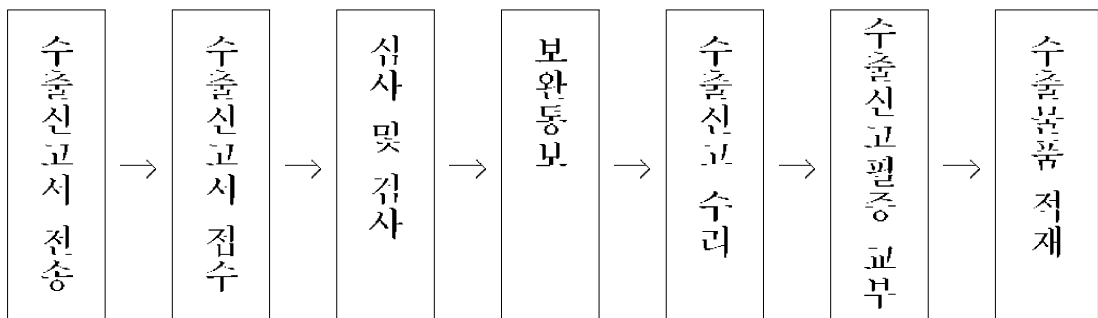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서 하려면 수출신고자 부호를 관할 세관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수출신고방법은 EDI시스템을 통한 방법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부호 신청절차[붙임 참조]

- EDI시스템을 통한 방법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신고인 PC에 EDI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수출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구비해야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이용절차[붙임 참조]

□ 수출신고절차



- ◇ 수출신고인은 물품 적재전까지 물품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
- ◇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수출신고서 및 해당구비서류 제출
- ◇ 형식적 요건심사 및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 실시
- ◇ 해당 수출건에 대한 수출신고 수리(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수리)
- ◇ 수출신고필증 교부(자동수리 및 P/L 수리건은 신청인이 직접 출력)

아하!!
그렇구나

□ 통관고유부호 신청 절차

- 담당부서 : 세관운영과(☎ 051-460-6035)
-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직접 제출(FAX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통관고유부호 등록시(가,나,다의 서류는 생략가능)
 - ⇒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다.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입증 서류
 -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시
 - ⇒ 가.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INVOICE
 - 나.기타 해외거래처의 국가,상호,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Unipass 가입절차

- 담당부서 : 세관운영과(☎ 051-460-6035)
- 신청인은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 인터넷 통관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후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세관 민원담당부서에 제출
- 이용신청 구비서류
 - 대표자 신청시
 - ⇒ 가.신청인의 신분증, 나.사용직원내역(사용자ID,성명등)
 - 대리인 신청시
 - ⇒ 가.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나.위임장, 다."통관포탈서비스 이용 신청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XII

기타 문의

59	○ 국내회사(A)가 외국에 있는 회사(B)에 공작기계를 주문 계약하였고, 외국에 있는 (B)는 국내에 있는 회사(C)에 재발주하여 (C)가 제조 가공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A)에 직접납품하고 (B)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할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 외환관리법
	☐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상 수출로 볼 수 없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 해당여부는 무역협회에 문의바랍니다 -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u>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u>’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1566-5114) ▶TIP: 기타 외환 거래관계는 주거래 외환은행, 매입/세출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하십시오

XII

기타 문의

60	○ 자동차를 몇 대 수출하려고 하는데 현지 구매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수출신고를 각각하지 않아도 수출신고가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2조(수출신고의 기준)
 아 하!! 그렇구나	☐ 원칙적으로는 구매자별로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당하나 필요에 따라 한 건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의 기준(고시 2-1-2조) -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 절 차 - 수출신고서 ④란 해외구매자부호란에 구매자 한곳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수출신고 수리를 득한 후 - 구매자별로 적재한 선사나 항공사에서 B/L 또는 AWB를 각각 발급받으면 된다. ☞ B/L 또는 AWB 발행관계는 관련 선사나 항공사와 상의필요 ☐ 수출신고서 전송시에 해외구매자부호 필수 입력 필요 ○ 구매자부호가 2008.5.2일부터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어 구매자부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오류통보 ※ 수출신고서에 해외 구매자부호를 기타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 ① 거래구분이 70,85,86,91,92,94,95 ② 수출종류가 F(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현지수출),P(우편수출) ③ 수출화주가 외국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XII

기타 문의

61

- 해외 현지법인에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관련 공사용 자재를 유상수출하면서 현지 관세 등 비용을 절감될 수 있게 구매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도 무방한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외환거래법



아 하!!
그렇구나

☐ 물품을 수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6조)

- 물품을 수입하면서 차액가격 만큼 공제처리하고 수입신고할 시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차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외화를 도피하는 행위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XII

기타 문의

62	○ 우리업체의 2008년 수출실적증명이 필요한데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	-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관한고시 제7-2조
 아 하!! 그렇구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합니다. ☞ 관세청 통계표 교부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ttp://trass.kctdi.or.kr) ☎ 02-3416-5116] 또는 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 1566-5114]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으십시오. ○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하며,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의 정보제공 자사실적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사전에 통관포탈가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제7-2조에 의거 <u>국영기업체, 수출입업자,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u>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통계교부대행자</u>에게 통계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제7-1조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를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교부기관에 제시하여야함 (별표2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기관 참고)

<별표2> (고시 제8-1조제2항 관련) <신설 2007.12.31.>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기관

통계자료 요청자	제공자
1. 중앙정부기관 가. 일반 중앙행정기관 나. 국회의원 자료 요구시 다. 감사원, 청렴위원회 등 감사기관 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마. 중앙언론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통관기획과) 관세청 홍보기획관리관. 다만, 당해업무 담당국장의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 관세청 감사관. 다만, 정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 담당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조사총괄과)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 다만, 당해 업무 담당과에서 기초통계를 받아 가공한 후 제공
2. 지방자치단체 가. 무역통계 등 단순 통계 요구시 나.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 해당 통계자료 요구시 다. 월별,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통관 기초자료를 제공받은 후 가공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지방언론사 및 중앙언론사 지사	당해 기관 소재지 관할 세관 (통관지원과) 소재지 관할 세관의 본부세관 (통관지원과) 예) 경기도청에서 자료요구시 ⇒ 관할 수원 세관의 본부세관인 인천세관에서 제공 관세청 통관지원국장(통관기획과) 본부세관 홍보담당관
3.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사무소 가. 수사기관 나. 감사기관 다. 세무서 등 조세기관 라. 기타	본부세관 조사부서(조사총괄과, 대구·광주는 조사과) 본부세관 감사부서(감사담당관실) 본부세관 심사부서(심사총괄과, 대구·광주는 납세심사과) 제2호와 같음 예)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자료요구시 ⇒ 관할 동해세관의 본부세관인 서울세관에서 제공. 다만, 단순통계는 동해세관에서 제공
4. 법원 가. 집행명령 등 민사사건 나. 형사사건	본부세관 통관부서 (통관지원과) 본부세관 조사부서 (조사총괄과)
5. 수출입자, 협회, 연구기관, 일반인 등	통계교부대행자

* 통계교부대행자가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통계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심사부서(심사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